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 189 호

제안일자 : 2016. 3. 21.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용어를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조).

나. 정의 조문을 신설하여 제1호에서 새마을지도자의 범위를 기존 새마을부녀 회원, 문고지도자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을 추가하고, 제2호에서 “학생”의 정의를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다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 로 함(안 제1조의2).

다. 지급받는 장학금의 정의를 상세히 설명함(안 제2조).

라.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간략히 설명하고 제2조와 중복된 각 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지도자 및 자녀 1인에게만 지급하고 국가, 공공기관, 기업 및 민간에서 학비보조금 등을 중복으로 받을 시에 지급에서 제외함을 명시함(안 제3조).

- 마. 장학생 추천자를 명확히 함(안 제4조).
- 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추천된 장학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구지회장과 협의하여 매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함(안 제5조).
- 사. 장학금 지급 기준을 명시함(안 제7조).
- 아. 조 제목을 변경 하고, 지급 주체를 구청장으로 하며,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지급 전 중복 여부를 최종 확인토록 하며 중복 지급 시 환수토록 함(안 제8조).
- 자. “사람에게는”을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으로, “지도자”를 “새마을지도자”로 현행대로 하며, “~재적학년 정원의”를 “~재적학년 학생 수의”로 “떨어진”을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으로 현행대로 함(안 제8조).
- 차. 조 제목을 “장학재원의 확보”로 하고, “~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반영 한다”를 “~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한다” 로 수정함(안 제1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인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1조의2(정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새마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말한다.
- 2.“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다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를 말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유공자장학금은 새마을사업에 공이 있거나 새마을사업 중 사망·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를 부모로 둔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2. 우등생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학생 수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3. 특기생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새마을사업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학생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새마을사업 시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학생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는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추천) 새마을지도자 강남구협의회회장과 강남구새마을부녀회장은 매 학년마다 공동으로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한다.

안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선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추천된 장학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구지회장과 협의하여 매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안 제6조 중 "지도자"를 "새마을지도자"로 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장학금)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공
납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
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장학금의 중복지급 확인 등) ①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전에 재학중인
학교 등에 중복지급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인결과 중복지급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
수하여야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을 “선발된 장학생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도자”를 현행 “새마을지도자”로 하며, 제3호 중 “재
적학년 정원의”를 “재적학년 학생 수의”로 하고, “떨어진”을 “떨어지거나”로 한
다.

안 제11조 중 조 제목 “(장학기금의 확보)”를 “(장학재원의 확보)”로 하고, “항
구적으로”를 “지속적으로”로 하고, “이를 반영한다”를 “반영한다”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신 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인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말한다.</p> <p>2.“학생”이란 「초·중등</p>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
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신 설>

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다니
는 새마을지도자의 자
녀 및 유자녀를 말한
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공자장학금은 새
마을사업에 공이 있거
나 새마을사업 중 사
망·부상을 입은 새마
을지도자를 부모로 둔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
학금

2. 우등생장학금은 품
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
적이 재적학년 학생
수의 100분의 50 이내
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새마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로서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지도자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재학생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다만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3. 특기생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새마을사업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학생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새마을사업 시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새마을지도자로서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에게는 지도자 경력 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1. 유공자는 현직 부부 지도자 또는 전·현직 지도자중 새마을사업 시행 중 공사상을 입은 자의 자녀

1. 유공자 장학생은 --

-- 지도자로서 ----
----- 공·
사상을 입은 사람의
--

<삭 제>

2.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

-----해당하
는 사람

<삭 제>

3.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

뛰어난 사람

<삭 제>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지방

②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학생으로 한다.

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 지도자 강남구 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 강남구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자치단체, 기업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및 학비 보조를 받는 지도자의 자녀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강남구 협의회장과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는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추천) 새마을지도자 강남구협의회장과 강남구새마을부녀회장은 매 학년마다 공동으로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한다.

제5조(선정) ① 구지회장
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
에는 서울특별시 교육
위원회 구 교육장의 의
견을 참작하고 다음 순
서에 따라 구청장과 협
의, 심사하여 매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장학
생을 선정할 때에는 가
급적 중·고등학생을
각각 50퍼센트 이내로
안배하고, 중학교는 학
교 간 평준화가 되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실업
계에 중점 배정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
학생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5조(선정) ① -----

----- 다음 순위에 따
----- 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 청장(이하 "구청장"이
----- 라 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조(장학생의 정원) --
----- 지도자 -----

-----.

제5조(선정) ① 서울특별
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추천된 장학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구지회장과 협의하여
매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1. ~ 4. (개정안과 같
음)

(개정안과 같음)

제6조(장학생의 정원) -
----- 새마을지도자

-----.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제7조(장학금) (현행과 같음)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

제7조(장학금)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공납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중복지급 확인 등) ①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전에 재학 중인 학교 등에 중복지급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인결과 중복지급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식하여 그만둘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 학생 수의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5. (생략)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

1. ----- 지도자-----

-----상실-----

<삭 제>

3. -----

4. 5. (현행과 같음)

② -----

-----.

1. ----- 새마을지도자-----

(개정안과 같음)

3. -----

4. 5.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p>구청장에게 <u>통보하여</u> <u>야 장학금의 지급을 정</u> <u>지시켜야 한다.</u></p>	<p>-----<u>통보하여</u>----- ----- -----.</p>	
<p>제11조(장학기금 확보)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 율적이고 <u>항구적으로</u> 운영하기 위하여 <u>매년</u> <u>정규예산에 계산한다.</u></p>	<p>제11조(<u>장학기금 확보</u>) - ----- ----- -----예산 편성 시 <u>이를 반영한</u> <u>다.</u></p>	<p>제11조(<u>장학재원의 확보</u>) ----- ----- <u>지속적으로</u>----- ----- -----<u>반영한다.</u></p>